

# 파트너십트레이닝 교과목 운영 규정(3-5-30)

최종 개정일 : 2015.11.26.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파트너십트레이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과목운영)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학습프로그램을 계획·수립, 팀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.

## 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3조(운영위원회 설치) 본 교과목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 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8.07.16).

③ 위원은 단과대학별로 1명씩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8.07.16)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
- ② 파트너십 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위와 관련된 기타 제반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3 장 파트너십트레이닝 교과목 운영

- 제7조(교과운영 및 이수기준) 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파트너십트레이닝 교과목 6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인성교육 2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파트너십트레이닝을 필히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운영방법) ① 본 교과목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팀 활동 특성상 해당시간에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, 기초교양교육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5.11.26.)
- ③ 팀 활동 지역은 교·내외를 포함한다.
- ④ 지도교수는 팀 활동시간에 학생들과 같이하거나 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.
- ⑤ 사회봉사 활동 또는 기타 팀 활동을 위하여 교외활동을 하거나 요일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, 1회 활동 당 1주 수업으로 인정한다.
- ⑥ 학생팀장은 학기 초에 운영계획서, 주차별 활동보고서, 학기 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교양교육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11.26.)
- ⑦ 지도교수는 학생 팀장이 작성한 운영계획서, 주차별 활동보고서,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여 정해진 평가요령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을 P/NP로 평가한다.

<평가기준>

활동 내용	출석	리더십 (정직/봉사)	협동력 (존중/배려)	문제 해결력	결과 보고서	총점
회수	총30시간	상 10점, 중 7점, 하 5점			학기말 제출	
배점	1시간/2점					
총점	60점	10점	10점	10점	10점	100점

※ P / NP : 기준 80점 이상

- 제9조(운영세칙) 교과운영 상 의학과, 교환학생, 해외연수참가자, 창의융합대학의 경우 총장의 인승을 받아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.07.16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범위) 직제규정 제25조(타 규정 적용) 및 전략기획18-0656(2018.07.16.) ‘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(안) 보고’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.

제4조제2항, 제4조제3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로 폐지한다.